



한국ESG기준원
(www.cgs.or.kr)

보도자료

배포

2026. 4. 30. (목요일)

보도일시

즉시 배포

담당부서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제 목 :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2026년 1분기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473사의 4,172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함
- KCGS는 4,172건 중 723건(17.3%)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이는 전년(14.9%) 대비 2.4%p 증가한 수치임
 -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안건 등의 반대 권고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정관 변경)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되면서 예년 대비 이례적으로 안건 수가 증가함
 - (이사보수한도)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전체 이사보수한도 합산 상정 방식에서 벗어나 이사별로 보수한도를 구분하여 안건을 상정하는 회사들이 다수 등장함
 - * 대법원 2025.4.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 올해 3월 자기주식 보유·처분 시 계획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해당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새롭게 등장함
 - (주주제안) 최근 자본시장에서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안건의 주제도 더욱 다변화된 모습을 보임

【붙임】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상세 결과

1. 개요

□ KCGS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6년 1분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473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함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제외

○ 분석대상 기업의 시장별 분포는 유가증권시장 311사, 코스닥시장 162사이며, 분석 기준은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26년 2월 개정)을 따름

2. 의안분석 결과

□ 분석대상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 총 4,17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임원 선임 안건이 1,569건(37.6%)으로 가장 많음

* 이사회 제안으로 한정

□ KCGS는 4,172건 중 723건(17.3%)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이는 전년(14.9%) 대비 2.4%p 증가한 수치임

○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인 기업도 전체 473사 중 352사(74.4%)로 전년(58.1%) 대비 16.3%p 증가함

<표1>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구분	전체	재무 정보 이배당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기타 비정 상 안건
				이사회				감사기구			계						
				사내 이사	기타 비상 무 이사	사외 이사	감사 위원 이 되는 사외 이사	소계	감사 위원	감사		소계					
반대 권고수(건)	723	48	199	74	9	71	77	231	36	31	67	298	108	5	11	54	
상정 안건수(건)	4,172	489	1,225	570	59	358	366	1,353	143	73	216	1,569	480	177	75	157	
2026년 반대 권고율(%)	17.3	9.8	16.2	13.0	15.3	19.8	21.0	17.1	25.2	42.5	31.0	19.0	22.5	2.8	14.7	34.4	
2025년 반대 권고율(%)	14.9	10.6	14.1	7.8	6.3	19.7	18.4	13.8	22.0	55.9	26.9	16.7	16.8	0.8	-	25.0	
2024년 반대 권고율(%)	13.7	6.6	17.8	8.7	4.4	16.2	21.8	12.7	18.4	43.5	24.4	15.1	14.8	0.7	-	28.7	

* 임원퇴직금지규정 제·개정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주식분할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등

- **(정관 변경)** 상정된 정관 변경 안건 1,225건 중 주주권리 보호 미비, 적대적 M&A 방어 등의 우려가 있는 199건(16.2%)에 대해 반대 권고하였으며, 반대 권고율은 전년 14.1% 대비 2.1%p 증가함

<표2> 2024 ~ 2026년 정관 변경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

반대사유	2026년		2025년		2024년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주주권리 보호 미비	147	61.3%	12	38.7%	14	29.8%
적대적 M&A 방어	47	19.6%	4	12.9%	3	6.4%
주주권 희석 우려	35	14.6%	12	38.7%	24	51.1%
이사회 기능 저해	11	4.6%	2	6.5%	6	12.8%
공시 불명확	-	-	1	3.2%	-	-
합계	240	100%	31	100%	47	100%

주1: 하나의 안건에 두 개 이상의 반대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

주2: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 비율 총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표에 동일 적용됨

-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전자주주총회 배제, 보수한도 명문화, 주주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사(감사) 책임감경 등 주주권리 보호 미비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 안건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배제가 금지되면서, 집중투표제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차임기제 도입과 같은 이사의 임기 구조 변경 관련 안건이 증가함
- 신주 또는 주식연계채권(CB, BW) 발행 한도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주주권 희석 우려로 인한 반대 권고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타 안건 증가에 따른 상대적 비중 하락으로, 안건 수 기준으로는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4년 : 51.1%(24건) → 2025년 : 38.7%(12건) → 2026년 : 14.6%(35건)

□ **(이사 선임)** 상정된 안건 1,353건 중 231건(17.1%)에 대해 반대 권고하여 반대 권고율이 전년(13.8%) 대비 3.3%p 증가함

- 이처럼 반대 권고율이 상승한 것은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전년도 7.6%에서 올해 13.2%로 크게 증가한 점에 기인하며, 사외이사(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20.4%로 전년(19.4%)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근 3년간 ‘행정적·사법적 제재’ 반대사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반대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27.5%)을 차지하였으며, ‘회사가치 훼손·주주권의 침해’, ‘출석률 저조 또는 정보 미공시’ 반대사유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3> 2024 ~ 2026년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

반대사유	2026		2025		2024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행정적, 사법적 제재	25	27.5%	5	14.3%	5	10.2%
회사가치 훼손, 주주권의 침해	23	25.3%	16	45.7%	14	28.6%
출석률 저조 또는 정보 미공시	21	23.1%	12	34.3%	21	42.9%
과다 겸임	16	17.6%	1	2.9%	-	-
기타*	6	6.6%	1	2.9%	9	18.4%
합계	91	100%	35	100%	49	100%

주: 하나의 안건에 두 개 이상의 반대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

*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요건 위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도하게 낮추는 사내이사 선임, 주요 정보 왜곡 및 미공개 등의 사유 포함

- 한편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근 3년간 회사가치 훼손·주주권의 침해를 사유로 반대 권고한 안건 수 및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담합 등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사외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에 반대 권고한 사례가 전년 대비 증가함

<표4> 2024 ~ 2026년 사외이사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

반대사유	2026년		2025년		2024년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73	45.3%	50	61.0%	51	55.4%
법령상 결격사유 및 충실성 우려	26	16.1%	11	13.4%	18	19.6%
회사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23	14.3%	10	12.2%	8	8.7%
장기재임*	13	8.1%	5	6.1%	1	1.1%
전문성 결여	5	3.1%	1	1.2%	-	-
성별 구성의 다양성 위반	4	2.5%	1	1.2%	5	5.4%
기타**	17	10.6%	4	4.9%	9	9.8%
합계	161	100%	82	100%	92	100%

주1: 하나의 안건에 두 개 이상의 반대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

주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포함

*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계열회사에서의 재직 기간도 포함

** 행정적·사법적 제재, 과도한 비감사용역 보수 등의 사유 포함

□ **(이사보수한도)** 상정된 전체 이사보수한도 안건(480건) 중 108건 (22.5%)에 대해 반대 권고하였으며, 반대 권고율은 전년(16.8%) 대비 5.7%p 증가함

○ 보수 총액 대신 이사별로 한도를 구분하여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을 상정한 기업은 16사(42건)로, 이들 기업은 대표이사와 그 외 이사로 한도를 구분하거나, 사내이사 개인별로 한도를 구분하고 그 외 이사는 통합하는 방식 등으로 안건을 상정함

○ 위 16사 중 과도한 보수한도를 사유로 1건 이상 반대 권고한 회사는 8사(50.0%)로 확인됨

○ 한편 이사보수한도 안건을 상정하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내용을 함께 기재한 기업은 10사로 전년(11사)과 유사한 수준이며, 주주총회소집공고상 기재 방식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표5> 이사보수한도 안건 주식기준보상 관련 내용 기재방식 상세

구분	보수한도 내 포함여부	공시 유형	기업 수
1	포함	RSU 지급에 따른 보수한도 증액 및 구체적인 규모를 함께 공시	1사
2		RSU 지급에 따른 보수한도 증액은 공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미공시	3사
3	미포함	보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RSU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 보상 제도를 공시	6사*

* 동일 기업 집단 내 5사 포함

○ (주식기준보상)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기업(4사)은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과는 별도로 RSU 및 PSU*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안건(4건)을 상정함

* 성과연동주식보상(Performance Stock Unit, PSU)은 회사의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임

- 주식기준보상은 임원의 장기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해당 기업들은 장기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가득조건을 설정하거나 보상체계의 구체적 내용, 주식 부여 기준 및 보상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되거나 과도한 보상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 전체에 대해 반대 권고함

□ (임원보수규정) 21건의 임원보수규정 제·개정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18건(85.7%)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함

○ 올해 임원보수규정 제·개정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19사로, 전년(2사)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임원보수규정 제·개정 안건을 상정한 기업의 78.9%(15사)가 동 규정에 보수한도액을 명시함

○ 위 경우에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 및 가결되지 않는 한 임원보수한도가 고정되는 구조이므로, 임원보수한도에 대한 주주의 통제 권한을 제한하게 되어 주주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 권고함

○ 실제로 임원보수규정에 보수한도를 명시한 회사의 대다수는 임원보수규정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당기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74사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전체 75건*의 안건 중 11건(14.7%)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함

* 경영상의 목적에 따른 처분 계획 승인의 건과 임직원 보상에 따른 처분 계획 승인의 건을 분리하여 상정한 기업(1사)이 있으므로 안건 수가 기업 수를 초과함

○ 발행주식총수 대비 과도한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상정하거나 구체적인 목적 없이 보유 계획을 상정한 7건(63.6%) 등에 대해 반대 권고함

○ 임직원 보상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상정하면서, 주식기준보상 지급 조건, 지급 대상 등 관련 공시의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자기주식 처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확인되므로 주주들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주주제안)** 분석대상 기업 중 15사에서 총 74건*의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42건(56.8%)에 대해 찬성 투표를 권고함

○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기업 수 및 안건 수는 각각 15사, 74건으로, 전년(7사, 80건) 대비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주주제안 안건은 배당(2건), 정관 변경(26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7건), 사외이사 선임(18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3건), 기타 안건(18건)으로, KCGS는 제안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이해상충 여부, 회사 가치 및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의견을 제시함

- 위 안전 중 정관 변경 안전이 26건(3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이 상정됨
 - 특히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과 회사별 문제의식에 기인한 권고적 주주제안 안전이 함께 상정되면서, 관련 안전 수는 전년 2건에서 올해 13건으로 크게 증가함
 - 비핵심자산 매각 및 활용, 재무지표에 근거한 자본배분정책 수립 및 임원보상 산정, 보상체계 구체화 등 주로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으로 여겨졌던 주제가 주주제안 안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주주제안 안전의 표결 결과, 경영권 분쟁 사례를 제외하고 가결된 안전 대다수는 이사 선임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룰’ 활용을 통한 이사회 진입 또는 회사의 제안 수용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향후 ‘합산 3%룰’ 이 확대 적용될 경우, 주주제안에 따른 이사회 진입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시사점

-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정관 변경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전을 상정하여 전체 안전 수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과 같은 새로운 안전 유형이 등장함
- 최근의 상법 개정이 주주권리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제·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기업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하여 주주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의 효과를 축소시키는 안전을 상정하면서 올해 주주총회의 반대 권고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결과가 나타남

-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이사회 정원 축소 및 임기 구조 분산, 대규모 상장회사 외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배제, 정관 내 이사보수한도 명문화를 통한 이사인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회피 등 주주권리 보호 미비 우려가 있는 안건이 전년 대비 증가함. 이에 주주들은 기업이 상정한 정관 변경 건의 모든 조항을 검토하여 주주권의 침해 여지가 있는지 세밀하게 판단해야 함
- **(이사선임)** 감시·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사외이사 반대 권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관투자자는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사안을 검토 및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함
- **(이사보수한도)** 이사별로 보수한도를 분리하여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 지급 등으로 보수한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현금보상 외에도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려는 기업들은 장기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상체계 및 보상규모의 적정성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상체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임원보수규정)** 임원보수규정에 임원보수한도를 금액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적절한 통제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함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됨. 이에 주주들에게 처분 규모의 적정성, 목적의 정합성,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결권 행사가 요구되는 한편, 구체성이 결여된 안건은 형식적인 승인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자본시장에서 주주권의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주제안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넘어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임

○ 다만 권고적 주주제안 중 실제 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하여, 권고적 주주제안이 단순한 문제 제기 또는 의견 표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제안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및 기업가치와의 정합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

<p>담당자(문의처)</p>	<p>윤소정 팀장(02-6951-3723) 구현지 선임연구원(white07@cgs.or.kr) 강성명 연구원(sm kang@cgs.or.kr) 문종원 연구원(jwm@cgs.or.kr) 최은지 연구원(ejchoi@cgs.or.kr)</p>
-----------------	--

※ 한국ESG기준원 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cg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